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3052

2022년 2월 14일 교 육 위 원 회

Ⅰ. 심사경과

1. **발의일자 및 발의자** : 2022년 1월 21일, 홍성룡 의원

2. 회부일자 : 2022년 1월 25일

3. 상정일자

○ 제305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(2022년 2월 14일 상정, 원안가결)

Ⅱ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홍성룡 의원)

1. 제안이유

○ 「학교보건법」제4조의3에서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공기정화설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제기됨. 이에 학교의 장이 「학교보건법」에 따라 설치하는 공기정화설비는 오염물질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의규정을 둠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공기정화설비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6조의5 신설)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21일 홍성룡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3052호로 발의되어 2022년 1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「학교보건법」에 따라 설치하는 공기정화설비는 오염물질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의규정을 둠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

- 미세먼지는 황산염과 질산염 등의 위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대기 중의 흡입성 입자물질로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
-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(WHO)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'초미세먼지'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¹)하였으며,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'사회재난'으로 규정하는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법령²)과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 등의 시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.
- 또한 서울시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시내 시내버스를 CNG

¹⁾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, 2018.11.08. '왜 미세먼지에 맞서야 하는가?'

^{2) 「}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,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

버스로 교체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및 매연 저감장치 부 착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,

서울시교육청도 '2018 서울시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'을 발표하고, 학교 미세먼지 통합관리 대책을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반 구축, 학교 미세먼지 관리 목표 및 저감 대책, 미세먼지 관련 교육활동 강화, 미세먼지 예방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.

[표-1] 서울시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관리 목표 설정(단위 : μg/m²)

구 분	법적기준	서울학교 관리목표			.ul
		1단계	2단계	3단계	비고
미세먼지	100	100	70	20	
초미세먼지	50	50	35	10	

○ 이와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교실 내 공기 질을 유지하기 위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등³⁾ 학교 내 미세먼지 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

[표-2] 2021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세부 점검방법4)

유지관리 항목	세부 관리내용	관리 주기(안)
점검 및 청소	평상시 공기정화장치의 운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청소	1~2개월 (프리필터의 청소)
세부 성능점검	필터의 오염 및 손상여부 등 점검 후 필요시 필터교환	3~6개월 (미디움 필터 이상)
주요 부품(송풍기, 열교환소자 등) 성능점검	풍량 및 내구성 저하 등의 점검후 부품 교환여부 판단	2년
유로 또는 덕트 등의 관리상태 점검	누기 점검 및 유로 또는 덕트내부의 청소여부 판단	3~5년

³⁾ 제4조의3(공기정화설비 등 설치) 학교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)의 장은 교사 안에서 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</u> [본조신설 2019. 4. 2.]

⁴⁾ 교육부, 학생건강정책과-2138(2018.3.20.) 「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용기준(안)」 첫시행 메뉴얼

○ 동 조례안은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학교내 공기정화설비 설치의 양적 확대에서 나아가 공기정화설비의 질적 성능을 조례로 규정하려 는 것으로,

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과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.

나. 궁기정화설비 등 설치에 대한 검토(안 제6조의5)

-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장이 학교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할 경우 그 공 기정화설비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「서울시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」5)을 통해 교실 및 체육관 확충 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학교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해왔습니다. 그러나 학교장이 학교현장에 적합한 성능의 공기정화장치 선정이 어렵고, 필터교체 등 사후관리6)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문제7)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.
-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'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운영기준' 8)과 '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' 9)를 통해 공기 정화장치 선정 시 교실 내 주변의 오염물질 발생경향 등을 고려하도

⁵⁾ 서울시교육청, 학교건강과-2020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(안)

⁶⁾ 서울시교육청, 교육부의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(안) 및 학교 공기정화장치 사후관리 방안 기안내

[[]체육건강과-5506(2018.4.10.)호 참조]

⁷⁾ 동아일보, 2019.8.8. [**가정용보다 못한 학교 공기청정기 논란**, 초등돌봄교실 설치용 필터 기준…신축 아파 트 정화 성능에 못미쳐 초미세먼지 40% 정도만 걸러내]

⁸⁾ 교육부 공고 2019-203호 학교 공기정화장치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

공기정화장치 선정 시 고려사항(안 제4조)

^{- &}lt;u>학교의 장이 공기정화장치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실 내 다른 오염물질의 발생경향 및 외부공기 오염에</u> 따른 자연환기 가능여부 등을 고려

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운영·관리(안 제5조)

⁻ 학교의 장은 공기정화장치의 가동 효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모품의 점검·교체 및 청소 등 실시

⁻ 학교의 장은 공기정화장치의 가동현황을 별도서식에 따라 작성·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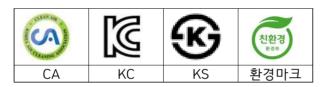
⁹⁾ 교육부 2020.7,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(개정판)

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또한 교육부는 학교장이 공기정화장치의 적합한 성능과 효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모품의 점검·교체 및 청소 등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

[표-3] 2020 교육부 공기정화장치 설치 기준

- 에너지 소비량 및 오존 발생량
 - 에너지 소비량을 고려하여 가급적 소비전력(W/m²)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고, 필터방식의 제품을 선택함(이온방식의 제품을 선택할 경우, 오존발생량을 확인함)
- 인증
 - 품질 및 안전인증 제품(CA, KC, KS, 환경마크 등) 여부를 확인함



- 산업표준(KS) 및 단체표준(CA)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라도 정부조달 등록제품 중 해당 제품의 규격서 가 산업표준(KS C 9314) 또는 단체표준(SPS-KACA002-132)에 따라 한국인정기구(KOLAS)의 인정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가 발급(기준 충족)된 제품도 포함함
- 공기청정기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제시한 규격(기준)에 대해서는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자료, 사용설명서, 시험성적서*등을 반드시 확인함
 - * 필터의 경우 원단 제조업체, 인증기관 등을 통해 해당 필터 성능 시험성적서 확인 등
-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공기정화설비의 성능과 관련된 사항을 「실내 공기질 관리법」 제2조제3호¹0)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 방지라는 명확 한 기준에 근거하여 공기정화설비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, 그동안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매뉴얼을 통해 안내되어왔 던 사항을 제도화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.

제2조(정의)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^{10) 「}실내공기질 관리법」

^{1. ~2}의2. (생략)

^{3. &}lt;u>"오염물질"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</u> 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^{4. ~ 5. (}생략)

참고로,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환경부령에 따른 오염물질은 「환경부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, 이산화탄소, 폼알데하이드, 총부유세균, 일산화탄소, 이산화탄소, 라돈, 휘발성유기화합물, 석면, 오존, 초미세먼지, 공팡이, 벤젠, 톨루엔, 에틸벤젠, 자일렌, 스티렌 등을 말함.

○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502, 2022.01.28.)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V. 토론요지 : 없음.

Ⅵ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.

Ⅲ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₩ 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5(공기정화설비 등 설치)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공기정화설비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6조의5(공기정화설비 등 설치)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공기정화설비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.